

직원 인권보호 안내문

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상호존중 수칙

-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, 존칭과 적절한 호칭(‘요양보호사’, ‘요양사’ 등)을 사용해 주세요.
-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입니다.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태도를 지켜주세요.
-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. 특히,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 준비, 집안 대청소, 손님 접대, 김치 담그기, 농사일 등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2. 폭언, 폭행 금지 및 예방 수칙

- 욕설, 위협적 언행,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,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될 수 있으며 민.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신체적 접촉, 밀치기,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,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.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3.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수칙

-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, 발생 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, 형사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[시각적 성희롱]
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.
- [언어적 성희롱]
성적 농담, 음담패설, 특정 신체 언급,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.
▶ “야”, “애인, ”이쁜이“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호칭도 포함됩니다.
- [신체적 성희롱] 불필요한 신체 접촉, 포옹, 손잡기,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입니다.
- [기타]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도 해당됩니다.

효도재가노인복지센터